

1 <코로나 19> 확산 방지를 위한 <홋카이도>의 긴급사태조치

1 구 역

홋카이도 전역

2 기 간

2020년 4월 17일 (금) 부터 2020년 5월 6일 (수) 까지

3 실시내용

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 제45조 <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협조요청> 및 동법 제24조 <도도부현(지방자치단체) 대책 본부장의 권한>에 의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.

■ 철저한 감염방지

- 도민들에게 다시 한번 <손씻기에 힘쓰기>와 <기침 에티켓 지키기>를 강하게 요청

■ 외출 자제 요청 등 [2020년 4월 17일(금)~5월 6일(수)]

- 도민들에게, 의료기관으로 통원 치료를 받으러 가거나 밖에서 운동 혹은 산책과 같은 건강 유지를 위한 활동, 식료품 및 의약품, 생활필수품 등의 구입, 직장에서의 출퇴근 등 생활 유지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출을 삼가할 것을 요청. 또한, 삿포로시와 타 지역간의 불필요한 왕래를 자제 할 것을 요청(특조법 제45조 제 1 항)

이와 함께, 직장으로 출퇴근 할 때는 <시차 출근>이나 <3가지 밀(密)(밀폐·밀집·밀접) 방지>를 유지하고, 이에 더해<재택근무>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(특조법 제24조 제 9 항)

- 특히,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는 변화가의 접객 음식점 방문 자제를 강력하게 요청(특조법 제45조 제 1 항)
- 전국적 감염방지의 관점에서 불필요한 여행 등 타지역으로의 이동 자제를 요청함과 동시에 황금연휴 기간 중에는 특히 왕래를 자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(특조법 제24조 제 9 항)

■ 시설 사용 정지 · 행사(이벤트) 개최정지(자제) 요청(협조의뢰)

- 시설권자 또는 행사(이벤트) 주최자에 대해 시설 사용정지 혹은 행사 (이벤트) 개최정지를 요청(협조의뢰) (일부 : 특조법제 24조제 9 항) [2020년 4월 20일(월)~5월 6일(수)]
- 상기 이외에 「3가지 밀(密)(밀폐·밀집·밀접) 회피」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집회 · 행사 개최는 자제 요청(특조법 제24조제 9 항) [2020년 4월 17일(금)~5월 6일(수)]

■ <홋카이도 사회적 거리두기> 추진

[2020년 4월 17일(금)~5월 6일(수)]

- 도민 및 사업자에게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실천해 나갈 것과 사람 사이의 물리적 거리 (서로 손을 뻗어서 닿지 않는 거리)를 확보하는 【사회적 거리 두기】를 매일 실천해 나갈 것을 요청